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65호
-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찬성자 33명)
- 발의일자 : 2021년 2월 5일
-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은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에,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의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서 “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① ~ ② < 생략 >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및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 ④ < 생략 >

- 현행 조례 제65조에서 “시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 ③ ~ ④ < 생략 >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의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4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16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평남 의원 외 33명	202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은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에,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 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의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추진경과	2021.2.5.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김평남 의원 외 33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과의 정합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명확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정편의 제공이 기대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팀장	정경란(☎2133-2634)	담당	김대훈(☎2133-2635)